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2207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더온 담당변호사 이강혁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39,857,48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857,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79,7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출장 뷔페를 운영하던 중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또한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45772호로 물품대금 및 연대보증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8. 17. C은 원고에게 30,4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5,76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 소유였는데, F가 2016. 12. 20. 사망함으로써(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인 피고, 그 자녀인 G, H, C에게 상속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7. I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2016. 5.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 피고 앞으로 2016. 12. 2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9. 28. 다시 위 조합 앞으로 2017. 7.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최고액

143,28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7. 7.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17. 9. 28. 마쳐졌다. 바. 2017. 7. 6. 무렵 C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있었던 반면, 그 무렵 C은 원고에 대하여만 원금 기준으로 1억 1,5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C은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J은행, K은행, L조합, 우정사업본부, M은행, 기업은행, N은행, O은행, P은행, Q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할협의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인 2016. 12. 20. 또는 망인의 49재를 진행한 후인 2017. 2. 6.경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 3. 8.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할협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 12. 20.은 망인의 사망일인데 통상적으로 사망 당일에 상속재산 분할협이가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이 2016. 12. 20.이라고 주장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2017. 7.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를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17. 9. 28.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7. 2. 6.에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017. 7. 6.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의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다고 볼 것인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9)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협의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를 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C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노력으로 마련되었고 피고로 하여금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협의를 하게 된 것인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협의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 피고 앞으로 2016. 12. 2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9. 2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2017. 7.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인의 사망 전인 2016. 6. 27. 위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43,28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금 116,19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7,887,084원¹⁾을 합한 234,086,884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9,358,7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가액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39,857,488원(= 179,358,700원 × 2/9,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결국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인 39,857,488원이 사해행위취소의 한도 및 가액배상액이 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6.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39,857,4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9,857,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혜원

별지

1) $30,431,000\text{원} \times \text{연 } 5\% \times 182/365\text{일}$, $30,431,000\text{원} \times \text{연 } 15\% \times 2408/365\text{일}$,
 $85,768,800\text{원} \times \text{연 } 5\% \times 182/365\text{일}$, $85,768,800\text{원} \times \text{연 } 15\% \times 2408/365\text{일}$ 을 합한 금액(원
미만 버림)